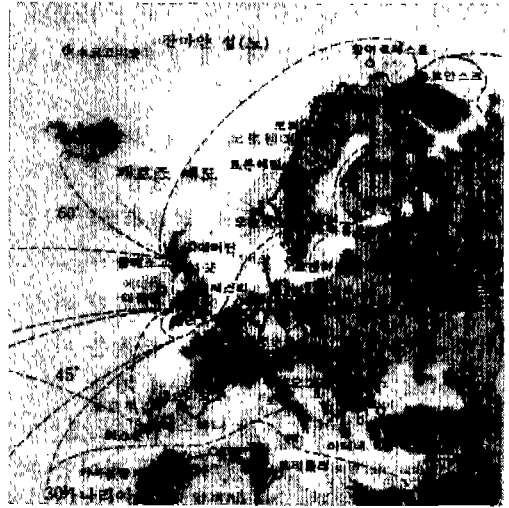


歐美各國의 電氣安全體制

(第 4 回)



英 國

1. 電氣安全管理制度

英國의 電氣事業이 1947年 電氣法에 의하여 국유화되기까지 電氣事業에 관한 법률은, 오래 전에는 1882年 電燈法으로부터 1936年 電氣供給(計器)法까지 수 많은 법률이 있었는데, 이들 법률중 電氣의 공급을 촉진하고 규제 또는 감독하는 電氣委員會(Electricity Commissioners)를 설립한 「1919年 電氣(供給)法」 및 電氣事業의發電 및 도급공급의 운용을 하는 中央電氣局(Central Electricity Board)를 설립한 「1926年 電氣法」은 그후 약간의 변천이 있었다고는 하나 電氣事業의 조직 및 시설의 운용면에서 가장 중요한 法律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1919年法에 의하여 설립된 電氣委員會는 그때까지 특정지구에 인가된 지방자치단체 운영 또는 私營의 작은 사업자가 소규모의 發電所를 단독으로 사용, 건설비, 운전비 양쪽 면에서 비능률적이었기 때문에 認可事業者가 相互 협정을 맺어 비교적 소수의 發電所에 發電을 집중하도

록 권장, 發送配電設備의 합리적 운용에 힘을 쏟았다.

또 1926年法은 소위 「그리드 시스템法」이라 불리는 것으로, 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中央電氣局을 公共事業체로 하여 發電所는 소유하지 않으나 132kV의 그리드 送電線을 건설, 여기에 각 사업자의 發電所中 同局이 지정한 고능력, 低 코스트의 發電所를 연계시켜 계획적으로 發電시키고 그 電力을 전부 同局이 구입하여 그리드 시스템을 통해 다시 각지의 사업자에게 도매, 發送配 전반에 걸쳐 電力 코스트가 최저가 되도록 각 사업자 사이의 협조를 하는 정책을 취하였으며, 상기 委員會는 그대로 존속시켜 이것들을 관리하도록 하고 準司法的 기능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이상은 國有化에 이르기까지의 電氣事業施設 관리운영면에 있어서의 二大變革이고, 모두 국유화를 위한 기초가 됐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電氣事業施設의 관리운영방식은 합리화가 진행되고 근대화 됐지만 電氣事業의 企業面은 여전히 약소사업자가 群立하였었기 때문에 다시 더 나아가 電氣事業의 기업조직을 통해

할 필요가 인정되게 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심의회가 1935년에 조직되고 그 答申이 1938년에 제출됐는데, 이것이 이른바 Mc. Gowan 보고이다.

이 보고는 예기한 바와 같이 電氣事業의 配電 및 小賣側의 조직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1947年 電氣法에 의해 電氣事業의 국유화를 성사시킨 근원이 됐다.

그러나 이 보고는 電氣事業에 관한 과거의 실적에 의하면 電氣施設에 관한 技術은 완전히 근대적이고 또 전문적으로 고려된 것을 공식으로 표명하고 電氣事業施設 그 자체의 설비규제에 대하여는 개정할 점이 없다고 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앞서 기술한 「1882~1936年, 電氣(供給)法」중의 電氣事業의 조직, 사업규제 등에 관한 諸조항은 1947年~電氣法の 제57조 및 부속서에 의하여 거의 폐지하였지만 (1890年 電燈(스코틀랜드)法, 1902年 電燈(스코틀랜드)法 및 1933年 電氣(供給)法은 전면적으로 폐지하였다) 이들 법률중의 電氣事業施設에 관한 諸條項(주로 送配電線路와 다른 설비, 예를 들면 가스, 수도관, 弱電線路와의 관계, 도로의 사용, 공중 안전 및 기타 電線路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거의 전부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되어 있다. 다만 前述한 1947年 電氣法 제57조 및 附屬書에 의해 국유화사업에 대한 적합 및 수정을 하고 또 그 후 Herbert 보고를 기초로 하여 電氣事業의 일부 조직 재편성에 관한 1957年 電氣法에 의하여 다시 약간 수정을 하였다.

또 電氣事業施設에 관한 조항은 물론 안전관리의 사항도 포함하여 前述한 바와 같이「1882~1936年 電氣(供給)法」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들은 물론 국유화 전의 법률이기 때문에 現狀에서의 규제를 이해하려면 1947年 電氣法 및 1957年 電氣法중의 上記 구법률 및 그것들에 의하여 제정된 제규칙에 대한 적합 및 수정에 관한 규정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각 조항중에 商務省(Board of Trade)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1942년에 이 商務省의

鑛山石油局 및 가스, 電氣에 관한 업무를 흡수하여 燃料動力省이 설립되고 또 1957年 1월에 動力省(Ministry of Power)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현재는 상무성을 동력성으로 불러야 한다.

이상과 같은 경위로 英國의 國有電氣事業은 主法律로서의 1947年 電氣法 및 일부 조직 재편성을 주된 목적으로 한 1957年 電氣法에 의해 사업운용이 되고 있고 電氣事業施設自体에 대해서는 「1882~1936年 電氣(供給)法」에 의하여 규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들 兩面의 電氣事業施設에 관한 규제의 골자가 되는 것을 다음에 기술하기로 한다.

즉, 1947年 및 1957年 電氣法에 의하면 電氣事業에 관한 모든 조치, 특히 新規發電所 및 送電設備의 건설은 動力長官이 電氣會議(Electricity Council)와 협의 후 승인한 계획에 따라야 한다. 또 電氣會議 및 電氣局(中央發電局 및 各地區 配電局의 총칭이다)은 電氣의 공급에 관한 사항, 기타 특히 자금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주로 年報)를 動力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 「1882~1936年 電氣(供給)法」에 의하여 各 電氣局이 架空電線路(引入線 제외) 및 發電所를 신설 또는 증설할 때는 動力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1899年 電燈法附屬書에 의하여 動力省 電氣檢查官이 임명되고 있으며, 이 電氣檢查官은 정기적 또는 특별한 경우에 사업자의 電線路 및 그것들에 의한 電氣의 供給을 檢査 및 試驗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電氣法상의 경우와는 관계가 없으나 炭鑛, 金屬鑛山 및 採石場에 대해서도 動力省의 소관으로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同省 鑛山部에 鑛山檢査局이 설치되어 있으며, 鑛山 및 採石場法에 의하여 同省 鑛山部가 제정하고 있는 鑛山部 電氣規程에 따르고 있는가의 여부를 鑛山檢査局 檢査官이 檢査한다.

한편, 電氣事業者가 發電所 등 一區劃内に 있는 電氣事業用施設(보일러 등을 포함)의 설비

규제 및 안전관리규제는 動力長官이 所管하지 않고 이것들에 대하여는 工場法에 의하여 勞動長官의 管轄로 되어 있다.

工場法은 일반적으로 工場 및 作業場에 적용되는 것으로, 종업원의 安全에 관해서 工場점유자(Occupier)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電氣設備가 電氣의 去來 또는 일반공급을 목적으로 설비되는 경우는 그 장소는 工場으로 간주되고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發電所 등에 대해서는 本法律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工場法에 의한 勞動省 工場檢査官은 電氣事業者의 發電所 및 一般工場, 作業場 등에 아무 때나 들어가 종업원의 안전을 위한 관점에서 工場法 및 이에 의한 제규칙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모든 시설을 검사하는 권한이 있다. 電氣事業者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發電所의 보일러인데, 이 檢査도 工場法の 보일러에 관한 조항에 따라 실시된다.

일반수용가 電氣設備에 관하여는 「1882~1936年 電氣(供給)法」에 의거 制定되어 1947년 電氣法에 의해 그 효력이 계속되고 있는 「1937年 電氣供給規程」에 의하여 專氣事業者에 대해 공급상의 안전을 확인한 후 供給接續을 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과 동시에 서비스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또 수용가측의 電氣設備가 구비해야 할 원칙적인 조건이 정하여져 있다.

따라서 이런 면의 地區配電局 檢査가 실시되는 외에 수용가 내의 電氣設備 自體의 工事方法 등에 관한 순수한 의미의 法的 規制는 없다.

또 一般工場, 作業場 및 鑛山에 대해서도 一般需用家の 경우와 같이 地區配電局 供給의 안전 확인 관점에서의 檢査가 실시되지만 「1937年 電氣供給規程」 내의 수용가 電氣設備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에 관한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각각 工場法에 의거한 電氣特別規程 및 鑛山과 採石場法에 의거한 鑛山部(動力省)電氣規程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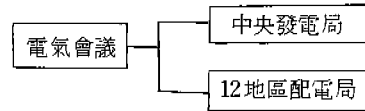
2. 電氣事業에 관한 安全管理體制

(1) 電氣事業의 사업형태

英國聯邦의 電氣事業은 北아일랜드 및 도서지방을 제외하고 완전히 國有사업이지만 직접국영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히 自主性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自家發電에 관해서는 사업운영은 완전히 자유이고 事業規制는 없다.

國有電氣事業의 運營조직은 다음과 같다.

(i) 잉글랜드 및 웨일즈(動力長官의 管轄)



(a) 電氣會議(Electricity Council)는 電氣事業 全體의 일반적 정책, 方針을 책정하고 주무장관인 動力長官의 자문에 응하는 기관이다.

(b) 中央發電局(Central Electricity Generating Board)는 發送電과 12개 地區配電局으로 都賣供給을 하는 기관이다.

〈표 7〉 英國電氣事業의 주요 데이터

(1962년)

發 電 設 備	總發電設備	42,490MW
	水力發電의 比率	3.7%
	火力發電의 比率	96.3%
	電氣事業者 發電設備	37,884MW
	事業用的 比率	89.0%
	其他의 比率	11.0%
發 電 電 力 量	總發電電力量	160,445×10 ⁹ kWh
	水力發電의 比率	2.5%
	火力發電의 比率	97.5%
	電氣事業者 發電電力量	143,581×10 ⁹ kWh
	事業用的 比率	90.0%
	其他의 比率	10.0%
	消費 電力量	
	販賣 電力量	122,357×10 ⁹ kWh (大부리덴)

(c) 12개 地區配電局(Electricity Area Board)은 주로 中央發電局에서 電力을 구입하여 配電하는 기관이다. 또 이들 地區配電局은 경영체로서는 電氣會議 또는 中央發電局的 하부기구가 아니고 법률상으로는나 경제상으로는 많은 自主성을 가지고 있다.

(ii) 스코틀랜드(스코틀랜드 國務長官의 관할) 남스코틀랜드 電氣局과 북스코틀랜드 水力電氣局이 각각 發送配電 一貫經營을 하고 있다.

북스코틀랜드 水力電氣局은 1943年 水力電氣開發(스코틀랜드)法에 의거 스코틀랜드의 水力資源 개발과 同地方의 지역개발이라는 특별지명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또, 英國의 發電設備은 그 대부분이 火力發電(97%)이고 실질적으로 火力發電國인데, 水力發電設備의 대부분은 북스코틀랜드 水力電氣局이 가지고 있다.

(iii) 公營 및 私營電氣事業

公營 및 私營電氣事業은 다음과 같은 것이 例外的으로 존재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① 北아일랜드에는 벨파스트市 및 런던 메리市에 市營電氣局이 있는 외에는 公營의 北아일랜드 電氣局이 공급하고 있다.

② 맨島는 더글러스市 電氣局 및 맨島電氣局, 海峽 諸島는 간디議會 電氣局外에 오르다니 電氣會社 및 저지 電氣會社의 兩私營會社가 공급하고 있다.

(2) 行政監督機關과 法令, 技術基準(주로 잉글랜드 및 웨일즈)

(i) 行政監督機關

(a) 動力省(Ministry of Power)

動力省은 1942년에 商務省(Board of Trade)의 鑛山石油局 및 同省의 가스 및 電氣에 관한 업무를 흡수하여 燃料動力省으로서 설립되어 1945年 燃料動力省法에 의하여 常設되게 되고 1957年 1月 명칭이 動力省으로 변경되었다(소관사항에 대해서도 商務省이 소관하던 철강관계 업무를 이관 받고 또 原子力의 이용도 소관하게 되었다).

다).

同省은 1942年 이래 大브리텐에 있어서의 연료 및 動力의 능률적, 협조적 생산과 공급을 확보하는 일반적 업무도 가지고 왔다.

가스 및 電氣의 생산 및 공급과 石炭 생산에 관한 업무, 즉 가스에 대해서는 가스局(Gas Board), 電氣에 관해서는 電氣局(Electricity Board)이라 총칭되는 中央發電局(Central Electricity Generating Board, CEGB) 및 各地區 配電局(Electricity Area Boards), 石炭에 관해서는 石炭局(Coal Board)의 세가지 國有産業의 局의 운영에 관한 감독규제를 하고 있다.

電氣事業에 관해서는 1947年 및 1957年 電氣法에 의하여 모든 電氣事業에 관한 法律 및 이에 따른 제규칙을 시행하고 鑛山에 관해서는 1954年 鑛山 및 採石場法 및 이에 따른 제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또 電氣事業에 관해서는 1899年 電燈法에 의한 電氣檢查官이 있고, 鑛山에 관해서는 1954年 鑛山法에 의한 鑛山檢查局이 설치되어 있다.

(b) 勞動省(Ministry of Labour)

勞動省은 1916년에 창설되어 1939년부터 1959년까지는 「勞動 및 國家奉仕省」(Ministry of Labour and National Service)로 알려져 왔으나 산업의 발달 및 高賃金으로 안정된 고용의 유지를 포함하여 일반고용정책에 관하여 다른 政府各省과의 조정을 하고 있다.

同省의 주요 기능의 하나는 종업원에게 年令 및 才能에 적합한 직장을 취득, 유지시키도록 원조하고 또 고용주로 하여금 적절한 노동자를 얻도록 원조하는 외에 고용교환에 대하여 國家的 機構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선 런던에 있어서의 전문가 및 行政官의 등록, 기술자 및 科學者의 등록과 保育施設 및 직업훈련에 관한 政府機構가 포함되어 있다.

同省은 工場法에 의하여 工場檢查局(Factory Inspectorate)을 통해서 産業勞動者에 대한 安全(電氣設備에 관한 安全을 포함), 衛生, 厚生 對策의 감독, 모든 종류의 勞動統計 수집 및 刊

行, 양호한 노사관계의 촉진 및 産業爭議의 조정, 중재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電氣設備에 관해서는 工場法에 의하여 電氣特別規程을 측정하고 있고 또 작업항목마다에 상세한 工場令(Factory Orders)를 공포하고 있다.

그리고 同省의 工務部에서 매년 발행되고 있는 「電氣事故와 그 原因」 및 매 4분기마다 발행되는 「事故,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 豫防法」은 安全에 관한 귀중한 자료로 되어 있다.

(ii) 法令, 技術基準

(a) 1882~1936年 電氣(供給)法
(Electricity(Supply) Acts, 1882 to 1936)
〔第V章 資料(II), B 1 參照〕

(가) 1882年 電燈法(Electric Lighting Act 1882)

電氣供給에 관한 최초의 법률이다.

電力施設에 관한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 14조: 電氣事業者는 지방당국의 동의를 없을 때 電線路의 설치에 관하여 인가되지 않는다.

제 22조: 惡意로 電線路를 절단하거나 또는 손상을 하는 자는 重罪가 되며, 5年 이하의 징역 또는 2年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제 26조: 電氣事業者가 郵政省의 電信線路의 임의부분에서 10야드 범위에 電線路를 설치할 때는 7~28日 전에 電線路의 루트 및 종류를 기재한 통지서를 郵政省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郵政省이 어떠한 요구를 하였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1888年 電燈法

(Electric Lighting Act 1888)

제 4조: 動力省은 電氣事業者에 대하여 電線路에 관해 공중의 안전 및 郵政省이 電信線路의 보호를 위하여 정하는 조건 및 규정에 따라서만 유지 사용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이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는 그 電線路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郵政省도 電信線路에 害를 끼치지 않도록 정한 조건 또는 규정에 따라서만 電

線路를 유지 사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은 電線路의 사용을 정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20파운드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 1889年 電燈(條件)法(附屬書)

(Electric Lighting(Clauses) Act. 1899-Schedule)

제 10조: 電氣事業者는 動力長官의 인가 또는 동의없이 또 地方當局의 동의를 없을 때는 引入線을 제외한 電線路를 지상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제 35조: 電氣檢査官의 任命-動力省은 수용가 또는 電氣事業者의 요구에 따라 1名 내지 數名의 電技檢査官을 任命할 수 있다.

電氣檢査官의 任務-(1) 정기적으로 또는 특별한 경우 電氣事業者의 電線路 및 그것들에 의한 電氣의 공급을 시험, 검사할 수가 있다. (2) 計器를 시험검사, (3) 기타 특별명령 또는 動力省規制(예를 들면 1937年 電氣供給規程)에 의해 요구되는 事項

(라) 1909年 電燈法

(Electric Lighting Act 1909)

제 2조: 電氣事業者는 發電所를 신설 또는 증설할 때는 動力長官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動力長官은 그 發電所가 있는 지역의 지방당국 및 發電所에서 300야드 범위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임대자에게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동의하지 않고 또 지방당국, 土地의 소유자 또는 임대자에게 반대진정의 기회를 준다.

(마) 1919年 電氣(供給)法

(Electricity(Supply) Act 1919)

電氣에 관한 여러가지의 기술적 제도를 통일하여 全電氣事業의 감독기관인 電氣委員會(Electricity Commissioners)를 설립한 法律이다(本委員會는 1947年 電氣法 第58條에 의하여 해산하였다).

主된 電力施設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 11조: 中央發電局, 地區配電局 및 北스코틀랜드 電氣局 이외의 자가 動力長官의 동의없이

發電所를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은 法에 위배된다. 단 自家用發電所의 新增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1조: 架空電線路를 설치하는데 있어 動力長官의 동의를 받았을 때는 電燈法, 기타 어느 것에 의해서도 지방당국의 동의를 필요없지만, 動力長官은 승인을 하기전에 지방당국에 대하여 의견이나 진정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 土地収用權

제34조: 動力長官은 이 법률에 의하여 長官에게 제출되는 신청서 기타 수수료, 通告 및 公告의 발표, 청문회의 개최 등에 관한 規則을 제정할 수 있다.

(바) 1922年 電氣(供給)法

(Electricity(Supply) Act 1922)

제11조: 電線路에 관한 토지사용을 계속하는 권한이 정해져 있다.

(사) 1926年 電氣(供給)法

(Electricity(Supply) Act. 1926)

「그리드 시스템法」이라고도 불리우며, 各發電所를 통제하고 주요 發電所를 연계하는 그리드系統을 만들어 配電事業者에 電氣를 도매공급하는 公共企業체인 中央電氣局을 설립한 법률이다. 이 이후 發送電業務가 실질상 國家管理가 되었다.

電力施設에 관한 주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4조: 電線路를 방해하는 수목 등을 벌채하는 권한이 규정되어 있다. 즉 수목 등이 電線路의 운전을 방해할 때 電氣局은 그 土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벌채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의 비용은 電氣局이 지불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통지를 낸 후 21일 이내에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電氣局이 직접 벌채할 수 있다. 기타 이 통지에 의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의 처리수속에 대해 規定하고 있다.

(b) 1943年 스코틀랜드 水力電氣開發法

(Hydro Electric Development(Scotland) Act 1943)

本法에 의하여 「北스코틀랜드 水力電氣局」이

發送配電의 일관사업자로서 설립되어 지역내의 水力電源開發에 관한 책임을 지는 외에 지역개발에 대해 협력하는 기능도 아울러 갖도록 되었다. 電氣事業 國有化의 선도가 된 것이다.

(c) 1947年 電氣法

(Electricity Act 1947 (國有化法))

全英國의 公私營電氣事業을 國有화하고, 英國 電氣廳과 그 하부기구인 14개 地區配電局 및 시설의 北스코틀랜드 水力電氣局이 사업 운영을 맡도록 규정하였다. 이 법률은 조직을 빼고는 電氣事業의 주된 법률로 되어 있는 것이다.

電力施設에 관한 주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9조: 土地의 강제매수—動力長官은 電氣局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土地의 강제적 매수를 인가할 수 있다.

제57조: 1882年~1936年 電氣(供給)法에 관해서 이 법률에 따로 정한 적합 및 수정을 조건으로 그 效力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58조 電氣委員會를 해산시키고 그 권한과 의무를 動力長官 및 電氣局이 계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0조: 動力長官에 대해 電氣局에 의한 電氣의 공급이 안정적이고 능률적이고 또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을 주고, 1882~1936年 電氣(供給)法에 의해 제정되어 이 법률의 발효직전까지 효력을 가진 규정은 그 효력을 유지, 이 제60조에 의하여 제정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本條에 의하여 電氣委員會가 제정한 架空電線路規程 및 1937年 電氣供給規程의 有效性이 보장되고 있다.

제66조: 動力長官 또는 스코틀랜드 國務長官은 1882~1936年 電氣(供給)法, 1943年法, 1954年 電氣事業再組織(스코틀랜드)法 또는 1957年 電氣法에 관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d) 1954年 電氣事業再組織(스코틀랜드)法

(Electricity Reorganization(Scotland) Act 1954)

1947年 電氣法에 의해 南西 및 東南 스코틀랜드地區 配電局이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12개 地區 配電局과 함께 주로 配電事業을 해 왔으나 이 법률에 의하여 南스코틀랜드의 電氣事業을 獨立시켜 「南스코틀랜드 電氣局」을 신설, 發送配電의 機關사업체가 되었다. 동시에 英國電氣廳은 中央電氣廳이라 개칭되었다.

(e) 1957年 電氣法(Electricity Act 1957)

國有電氣事業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事業組織을 변경함과 동시에 운영방법에 대해서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이 法律에 의해 中央電氣廳이 해체되고 새로 電氣會議와 中央電氣局이 설립되었고 각 지구마다 地區諮問會議가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各地區配電局은 광범위한 自主性을 갖는 독립된 機關으로서의 성격이 짙어졌다.

電力施設에 관한 주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 8조(4):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각 電氣局은 多額의 지출을 요하는 再組織處置 또는 확장공사를 실시할 때는 해당 電氣局이 電氣會議와 협의하고 또 長官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一般계획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제 32조: 電線路의 설치에 관한 기타의 규정- 1899年 電燈法 부속서 제 10조에 의한 動力長官의 인가 또는 同意를 구하는 신청은

(1) 文書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2) 電線路의 설치예정지를 지도에 의해 설명하여야 하고

(3) 그 電線路 설치예정지의 土地所有者 및 占有者와의 사이에 土地使用權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協定을 체결하였는가의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34조: 動力長官에 대해 1899年 電燈法 附屬 規 則 제 10조에 의한 同長官의 인가 또는 同意를 구하는 신청, 또는 1909年 電燈法 第 2條에 의한 長官의 同意를 구하는 申請이 있을 때 地方計劃局이 그 신청에 異議가 있다는 취지를 長官에 보고하였을 때는 長官은 公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長官이 인가 또는 동의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그 易議 및 公聽會 主催者의

보고를 감안하여야 한다.

(f) 1937年 電氣供給規程

(Electricity Supply Regulations 1937. for Securing the Safety of the Public and for Insuring a Proper and Sufficient Supply of Electricity)

1882~1936年 電氣(供給)法에 의하여 주어진 電氣委員會(本委員會의 설립은 1919年 電氣法에 의함)의 권한에 의하여 同委員會가 제정한 것이다. 또 이 電氣委員會는 1947年 電氣法에 의해 해산하고 그 권한은 燃料動力長官(現在 動力長官으로 되어 있다)에 이양되었다.

電氣事業用的 電線路 系統 및 器機, 變壓, 制御 및 需用家에의 공급에 관해서 본질적으로는 電氣事業者에 적용되는 것인데, 需用家設備가 있는 최소한의 안전상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는 電氣事業者는 그 설비에 配電線을 접속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조항이 있으므로 간접적으로는 수용가에게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工場法에 의한 電氣特別規程 및 鑛山部 電氣規程이 적용되는 수용가에는 본 규정의 수용가 내부시설에 관한 조항은 적용이 안된다.

本規程 제 37조에 의거 動力長官으로부터 正式으로 인정된 직원은 電氣事業者의 공사의 점검, 검사 및 시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본 규정 제 38조에 電氣事業者는 死傷事故를 動力長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하였을 때의 벌칙이 규정되어 있다. 動力長官은 電氣檢査官을 임명, 安全에 관한 電氣事業者의 설비를 수시 검사시킬 수 있다.

또 電氣事業者는 본규정에 의하여 供給上の 안전에 관해 수용가의 설비를 검사한다.

[制定 기타]

본규정은 前述한 바와 같이 電氣委員會가 제정한 것이지만 1947年 法 제 60條에 따라 動力長官의 권한에 의해 動力長官이 제정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다.

(g) 架空電線路規程

(Overhead Lines Regulations)

上記한 1937年 電氣供給規程의 경우와 같이 電氣委員會가 제정한 것으로서, 電氣法 과의 관계도 같다.

[適用, 施行 등]

電線의 종류, 電線의 強度 및 굵기, 지지물의 安全率, 電線의 지상높이 등과 같은 설계조건 및 다른 電線路와의 교차, 도로횡단시의 공사방법, 誘導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動力長官의 권한에 의하여 同長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추가 또는 다른 조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動力長官은 發電所 및 變電所에 관한 안전면은 소관사항이 아니나 架空電線路에 관해서는 公衆의 안전면에서 이를 관장하고 있으며, 架空電線路를 건설할 때는 1수용가에 대한 引入線을 제외하고 動力長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動力省 檢査官이 檢査할 때가 있다.

(h) 工場法 (Factory Act)

현재 발행되고 있는 것은 1961年 工場法 (Factory Act 1961)인데, 이것은 1937년부터 1959년까지에 공포된 工場法 및 노동자의 安全, 위생 및 후생에 관한 약간의 다른 法律을 통합한 것이다.

이 工場法은 일반적으로 工場 및 作業場에 적용되는 것으로, 노동자 및 고용주가 따라야 할 상세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 안에는 發電所 등 (Electrical Stations)에 관한 특별한 조항이 있어 電氣設備가 電氣의

거래 또는 일반에 대한 공급을 목적으로 설비되었을 때는 그 설비된 장소는 工場으로 간주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런 점에서 電氣事業者의 電氣設備 시설장소가 本法律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때 일반적인 工場에서의 電氣設備는上記한 Electrical Station의 정의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工場의 일반적인 해석에서 本法律의 적용을 받는 것은 명백하다.

[適用, 施行 등]

제123조에는 전항의 후반에 기술한 電氣事業者에의 적용을 규정하고 또 제146조는 工場檢査官의 권한에 관한 조항으로 本法律에 의한 工場檢査官은 주야로 타당한 시간이 있으면 언제라도 공장에 들어가 檢査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工場檢査官은 여러가지의 권고를 할 수 있지만 이 권고 자체는 法的強制力이 있는 것은 아니고 法的強制力을 갖는 것은 法律의 조항 그 자체뿐이다.

또 제33조는 보일러의 保守, 檢査 및 사용에 관한 조항으로, 發電用 보일러는 本條의 적용을 받고 本條에 의한 檢査를 시행한다. 이에 의하면 보일러는 勞動長官이 특별규정에 의하여 규정, 앞서의 檢査에서 정하여진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기간마다 檢査하지 않는 한 어떠한 工場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중요한 점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또 1937年 工場法 (Factory Act, 1937) 제29조에 의하면 보일러는 적격한 사람 (A Competent Person)에 의하여 적어도 每 14개월에 1회 및 광범위한 수리를 한 후 전면적인 檢査를 하도록 되어 있다.

(i) 1908年 및 1944年 電氣(工場法) 特別規程 (Electricity (Factories Act) Special Regulations 1908 and 1944)

工場法에 의하여 勞動長官이 공포한 것이다.

[適用, 施行 등]

工場作業場 및 電氣事業用 發電所 外에 진조 과정에 있는 선박 및 건물에서의 작업, 건물에

지체로운

절약생활

약속되는

복된생활

관련된 구조물의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의 電氣設備에 관한 노동자의 安全에 관한 규정으로서, 安全上 필요한 시설상의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勞働長官은 工場法 제145조에 의하여 工場檢査官을 임명하고 있으며, 언제나라도 工場, 기타를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工場檢査官은 公式摘要(Official Memorandum)을 작성하여 法律 및 規程을 관계자가 이해하도록 만들고 있다.

[制 定]

역사적으로는 內務省(Home Office)이 공포한 것으로, 아직까지 內務省規程(Home Office Regulations)이라 불리고 있지만 근년에는 勞働部(Ministry of Labour)에서 관장하고 있다.

工場法 제53조 및 제76조에 의하면 工場 또는 기타의 작업장에서 主務長官이 노동자의 안전위생상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을 때는 적절한 시설을 하도록 점유자에게 요구하는 특별한 규정을 제정하도록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本規程은 이에 의하여 勞働長官이 제정한 것이다.

(j) 實施規程(Codes of Practice)

法令으로서 시행되는 規程의 요구사항은 간단하고 그 數도 적으므로 다종 다양한 設備, 裝置 및 용도물 法令으로서 시행되고 있는 것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指導書가 되는 것이다.

[適 用]

英國標準(BS)는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器機, 裝置, 材料 등의 표준으로서, 電氣技術에 관해서도 많은 표준이 있다.

실시규정은 주로 建設, 工事 등의 방식 및 방법에 관한 표준으로서, 英國에서는 器機, 裝置, 材料 등과 같이 그 표준화에 있어서 理論的 定義를 하기가 비교적 쉬운 것(그 표준 자체는 한편 技術的으로 강제성이 있다)에 대한 標準(BS)과 구별하여 實施規程(Code of Practice)으로서 취급하고 있다.

이 實施規程은 土木工事, 公共工作物, 建築 및 建設工事を 취급하고 있는데, 電氣에 관한 것으로서는 配線方式, 각종의 電氣設備, 電氣機械,

引入線, 住宅, 學校 등의 照明裝置, 放送受信, 擴聲裝置, 無線障害防止 등을 취급하고 있다.

그의 적용은 任意대로이나 국가적인 권고이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강제성을 띠는 때가 있으나 이때는 個個에 대하여 관제법령에 정해져 있다.

[制定 및 改定]

制定機關—英國標準協會(British Standards Institution—BSI)

實施規程은 1942年 建設省(Ministry of Works)의 주도에 의하여 衛生省(Ministry of Health) 기타의 政府當局과의 협의 결과 설립된 實施規程委員會(Codes of Practice Committee)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이다. 이것은 주요 專門的, 科學的인 단체, 英國標準協會(BSI), 全國建築業會議(Building Industries National Council) 기타의 기관에서 임명된 대표자로서 구성되고 있으며, 會長은 建設省에서 임명된다.

최초의 實施規程은 구조물의 雷에 대한 보호에 관한 CP1(1943)이었는데, 이것은 처음에는 英國標準에 대한 草案으로 작성된 것이지만 雷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것에 대해 강제적인 의의를 갖는 標準化를 도모한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結論에 도달하여 이 실시규정으로서 발표되었다.

立案—제안된 문제에 대하여 관계책임기관의 명백한 支持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實施規程의 준비가 시작된다. 關係技術委員會는 1次 草案을 작성하여 주요 관계자에게 이를 배포, 의견을 구한다. 技術委員會는 受理한 의견을 참조하여 재검토를 한다.

承認—技術委員會의 합의를 얻은 후 第2次 草案을 관계 工業標準委員會에 제출하여 승인을 구한다. 技術委員會 및 工業標準委員會에서 합의가 안될 때는 總括會議의 執行委員會에 상정하여 조정을 한다.

發行—英國標準協會(BSI)의 刊行物에 게재하여 발행된다.

(다음 號에 계속)